

2025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에서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 및 농업기계 구매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「2025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0일

서울특별시

1. 사업 개요

- 지원대상 : ①서울시에 주소(1년 이상 거주)를 두고 ②서울시 또는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에 농지를 둔(1년 이상 경작) ③농업경영체 등록한 자

※ 지원제한

- ▶ 1농가 1기종 지원
- ▶ 과거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

- 지원내용 : 농업기계 구매 소요자금 일부 지원

-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‘(25.1.1.)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’에 수록된 농업기계로 농업인이 기종을 선택

- 사업비 : 시비 50백만원(농협지원금 50백만원 및 자부담 별도)

- 농협지원금은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에 한해 시비와 매칭 지원

○ 지원금액

구 분	조합원			비조합원		
	1천만원 이하	1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	1천만원 이하	1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농기계 가 격						
시 비	30%	3백만원	3백만원~ 5백만원	30%	3백만원	3백만원~ 5백만원
농 협	30%	3백만원	3백만원~ 5백만원	-	-	-
자부담	40%	차액	차액	70%	차액	차액

- 트랙터,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(5천만원 이상)의 농업기계 신청 시 **협의회를 통하여 지원액 조정**
- 지원한도 초과되는 농기계 신청 농가의 **초과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**
- 1농가 1기종 지원 원칙(부속기 포함, 부속기 단독 지원 불가)

2. 사업 신청

○ 신청기간 : 2025. 2. 12.(수) ~ 2. 28.(금) 18시 접수마감

○ 신청방법 : 방문신청

○ 신청장소 :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(본점)

- 1농가 1농업인(농가주) 신청
- (붙임1)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

※ 참고사항 : 신청후 임의적 기종 변경은 불가하며(선정 지원액 범위내 농업기계로 변경 승인후 변경해야 함), 선정후 포기시 당해 지원자로 간주하여 향후 재신청시 평가항목 감점

▶ 제출서류 ※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- 주민등록등·초본 1부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
- 소득금액증명원(2023년 귀속) 신청인·배우자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: 배우자 없는 여성 농업인에 한함
- 인증관련 서류(친환경 또는 GAP) 1부 : 인증 농업인에 한함
- 구매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견적서 1부

3. 지원대상자 선정 : 평가점수 및 선정협의회를 통한 선정

- 평가방법 : 평가항목별 정량평가

구 분	합계	농업인 연령	재배 면적	소득 수준	여성 농가주	청년농	친환경 인증농가	후계농업 경영인
배 점	100	20	25	20	10	10	10	5

※감점항목: '20~24년 기존 선정자 중 사업포기자 / '20~24년 기수혜자

- 선정협의회 : 2025. 3월 예정
- 결과발표 : 2025. 4월 예정
-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액 확정시 대상자에 선정확인서 통보

4. 농업기계 구매 및 보조금 신청

- 구매방법 :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·인수

- ▶ 농업기계 구매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업자에게 구매하여야함
 -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(모델)을 등록하고,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업체
 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른 사후관리업자로서 제조업자·수입업자·위탁판매업자와 하수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'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'를 발급받은 업체
- ▶ 농업기계 공급시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임을 알수 있는 표식 부착

- 보조금 신청 : 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, 구입내역 및 지불내역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
 - 구입내역 증빙서류 : 계약서, 견적서, 납품서 등
 - 구입비용 지불내역 : (전자)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등

5.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

구 분	내 용
사후관리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적용 : 5년 -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46조 제3항에 제4호에 따름 ○ 기종별 내용연수 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시행규칙 [별표2]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
처분제한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원칙 ○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을 금함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업기계 계속 사용 ○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, 망실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, 시장의 승인 후 폐기 ※ 농업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향후 지원 제한 할 수 있음

6.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조치사항

-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(전부 또는 일부)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

* 부정수급 사유

- ①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
- ②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한 경우
- ③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* 중도회수 사유 : 사업대상자가 사망, 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등으로 1년 이상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

-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지원 제한

7. 문의처

-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업지원팀(☎02-2133-4462)
- 농협중앙회 서울본부(☎02-2224-8105)
-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(붙임2)

- 붙임 1. 신청서(서식) 1부.
2. 지역농협 안내처 1부. 끝.